

KMI 동향분석

VOL.162

2019 DECEMBER

발간년월 2019년 12월(통권 제162호) 주 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발행인 장영태
감 수 홍현표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자료문의 기획조정본부 연구관리실 홈페이지 www.kmi.re.kr
이 보고서는 KMI에서 진행 중인 「수산물 원산지 거래증빙자료의 비치·보관의무 도입방안 연구」 내용 중 일부를
활용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거래 증빙자료 보관 의무 도입방향

임병호 FTA이행지원센터 센터장
(bhlilm@kmi.re.kr/051-797-4554)
백진화 FTA이행지원센터 연구원
(jhbaek@kmi.re.kr/051-797-4545)
박혜진 FTA이행지원센터 연구원
(phj4798@kmi.re.kr/051-797-4596)
백준혁 FTA이행지원센터 연구원
(sky3422@kmi.re.kr/051-797-4914)

우리나라 국민들의 외식 비중이 증가하면서, 농수산물 먹거리에 대한 원산지 표시가 주요 관심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와 함께 수산물 원산지 표시와 단속 효율화를 위한 거래 증빙자료 발급·보관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원산지 표시 방법의 준수와 이를 뒷받침하는 거래 증빙자료가 적절히 비치·보관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법령의 미비 및 관련 업계의 인식 부족 등 원산지 표시의 투명한 이행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점이 존재한다.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대부분의 수산물은 수입시 원산지가 표시되어야 한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으로 규정된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은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여 수입, 유통, 판매되어야 하며, 일반음식점 등에서 조리되어 판매되는 경우에도 원재료의 원산지를 메뉴판 등에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음식점 등의 운영자는 원산지 표시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6개월간 비치·보관하여, 원산지 표시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단속에 효율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서는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거래 증빙자료의 발급 및 보관 의무를 두지 않고 있어, 실제 원산지 표시 단속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음식점 등의 수산물원산지 표시 단속을 수행하는 정부기관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원산지 표시 단속 업무에 비하여 인원이 부족하여 효율적인 원산지 표시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의 원산지 표시 체계를 살펴보면, 미국은 농업보장 및 농촌투자법(2002 Farm

bill)을 근거로 주요 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의무와 함께 거래 증빙자료를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일본의 식품 표시법, EU의 ‘소비자에 대한 식품 관련 정보 제공에 관한 제1169/2011호 EU 규정(Regulation (EU) 1169/2011)’에서도 각각 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도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거래 증빙자료의 발급 및 보관 의무를 도입한다면, 원산지 표시 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농수산물 거래 증빙자료의 발급 및 보관과 관련된 정부기관 및 업계의 인식조사를 수행하여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도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거래 증빙자료 보관 의무 도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일반음식점 등의 운영자는 매입 영수증 및 거래 명세서의 의무 보관을 추가적인 업무로 인식하고 있으며 관리비용의 발생에 따라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인식은 거래 명세표 등 거래 증빙자료를 원산지 표시의 근거로 사용하지 않고, 현품에 표시된 원산지 표시를 메뉴판에 표시하는 원산지의 근거로 사용하는 관행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유통업계에서는 거래 명세서의 발급 의무가 소비자 신뢰도를 향상시킬 것이라고 답변하기도 하였으나, 영세 업체일수록 서류의 관리비용 상승이 가격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하였다. 일부 업체는 수산물 거래의 대부분이 직거래를 통한 현금거래로 이루어져, 영수증이나 거래 명세서를 발급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당국에서는 원산지 표시 단속의 효율성 증가로 투명한 수산물 원산지 표시 체제를 확립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일부에서는 투명성 확보를 위한 대체안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예를 들어, 수입 유통 이력제의 활용이나 기타 원산지 표시 의무의 완화를 통하여 거래 증빙자료의 보관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존재한다고 설명하였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도입 방향으로서, 첫째, 거래 증빙자료 발급·보관 의무 도입 및 이행을 제도화하기 위해, 수산물 영업의 종류와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의무 부과 대상자를 특정하는 법령의 도입과, 의무 보관 대상 수산물의 종류를 단계적으로 적용 확대해 나가는 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이력제 등 원산지 표시 확인이 가능한 관련 법 규정의 활성화이다. 축산물 원산지 표시의 경우, 「축산물 위생관리법」,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이 활성화되어 있어, 원산지 표시도 자연스럽게 이행되고 있는 모습이다. 수산물의 경우에도,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수산물 이력제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를 활성화한다면 원산지 표시 제도에도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셋째, 거래 증빙자료 의무도입의 효율적 이행을 위하여 민간 지원 체계 구축을 제시하였다. 민간 부문에 대한 거래 증빙자료 전산화 지원은 전산시스템 도입을 통하여 거래의 투명성 확보 및 신속한 단속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정부부문에 대한 지원책 마련으로서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업무와, 수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에 대한 단속비용 상향 등으로 원산지 표시 단속 행정인력의 보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도 운영 현황

■ 1인 가구 증가 및 농수산물 먹거리 위생에 대한 우려 등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농수산물 안전 및 원산지 표시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 증대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국민영양조사결과(2017)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하루 1회 이상 외식률은 2008년 24.2%에서 2017년 32.6%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우리나라 국민들은 과거 광우병과 수산물 방사능 이슈 등 국민건강과 직결된 농수산물 먹거리 이슈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관심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음

■ 농수산물을 음식점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 원산지를 메뉴판 등에 표시

- 원산지 표시는 비특혜 원산지 제도의 하나로써 관련 법령으로는 「대외무역법」, 「관세법」 그리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등이 있음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서, 수입 및 국내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방법과 의무대상자 등을 규정함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으로서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중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위탁급식소나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음식점 등 운영자라 함)'로 규정함
- 음식점 등 운영자가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물품은 크게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농축산물 8개, 수산물 12개 품목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의무가 존재함

표 1. 음식점 등의 운영자가 원산지 표시하여야 할 농수축산물

구 분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
축산물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염소, 유산양을 포함)고기 (식육 · 포장육 · 식육가공품을 포함)
농산물	• 밥, 죽, 누룽지에 사용하는 쌀(쌀가공품을 포함, 찰쌀, 현미 및 찌릿쌀을 포함), • 배추김치(배추김치 가공품 포함)의 원료인 배추(열갈이배추와 봄동배추 포함), 고춧가루 • 두부류(가공두부, 유바 제외), 콩비지, 콩국수에 사용하는 콩(콩 가공품 포함)
수산물	•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한 것은 제외),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및 참조기(해당 수산가공품 포함), • 조리하여 판매 · 제공하기 위하여 수족관 등에 보관 · 진열하는 살아있는 수산물

자료: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 시행령 제5조

주 :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수산물은 12종에서 15종(다랑어, 아귀, 주꾸미 추가)으로 확대 예정(2020년 4월)

■ 음식점 등 운영자는 원산지 표시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6개월간 비치·보관해야

- 음식점 운영자는 직접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바, 소비자에게 최종적으로 원산지를 알리는 자이기 때문에 원산지 표시 및 관련증빙에 대하여 유통판매업자와 차별화된 규정이 필요함
- 축산물의 경우, 원산지 표시와 함께 원산지에 대한 증빙 자료를 6개월간 구비하게 하여, 원산지 표시의 신뢰성을 높이고 단속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음

■ 그러나 수산물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 거래 증빙자료의 발급 및 보관 의무가 없어 원산지 표시 단속에 어려움 발생

- 농수산물의 경우 영수증 또는 거래 명세서 발급의 근거가 되는 관련 법률은 없으며, 해당 증빙자료의 보관 의무가 명시된 법령은 축산물 뿐임
- 축산물에 대해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또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급받은 원산지 등이 기재된 영수증이나 거래 명세서를 보관하는 것이 가능하나, 수산물의 경우 증빙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서류의 발급 의무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지 않아, 거래 증빙자료의 보관의무도 없는 상태임

표 2. 농수축산물 거래 증빙자료 발급법령

구분	거래 증빙자료의 발급					
	일반거래			이력추적관리		
	대상품목	근거법령	발급 의무	대상품목	근거법령	발급 의무
축산물	축산물(소, 말, 양, 돼지, 닭, 오리,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의 식육)	축산물 위생관리법	의무	· 가축(소, 돼지)* · 축산물 - 국내산: 개체식별번호가 부여된 이력관리대상 가축, 농장식별번호가 부여된 가축사육시설에서 사육한 식용 돼지 축산물** - 수입산: 이력번호가 부여된 식용 수입쇠고기, 돼지고기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의무
농산물	없음	없음	선택	농산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선택
수산물	없음	없음	선택	수산물 (수산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선택***

자료: 법령 참조하여 저자 작성

* 이력관리대상 가축은 2020년 1월 1일 소, 돼지, 닭, 오리로 확대 시행예정

** 이력관리대상 축산물은 2020년 1월 1일 돼지, 닭, 오리로 확대 시행예정

*** 굴비, 생굴에 한하여 2021년 11월까지 이력관리 의무시범사업 실시중

■ 음식점 등의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수행

- 우리나라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업무는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 관세청 등에서 합동으로 담당하고 있으나, 주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수행함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정원은 2019년 현재 총 251명이며, 이 중에서 본원 품질관리과가 원산지 표시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이 중 25명이 원산지 표시 관리업무를 포함한 수산물 품질인증, 이력추적관리, 안전성조사 등의 업무를 함께 수행 중임

표 3. 농수산물 품질관리원 정원 현황

(단위: 명)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농산물	1,436	1,440	1,421	1,408	1,404	1,425	1,433
수산물	202	210	207	205	215	226	251

자료: 농산물(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원 정원표), 수산물(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공무원 정원표)

■ 미국·일본 등 주요국 원산지 표시 제도에서 원산지 증빙자료 보관 의무 또는 권고

- 미국 등 주요국가들은 모두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 하고 있으나, 음식점 원산지 표시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미국은 농업보장 및 농촌투자법(2002 Farm bill)을 근거로 주요 신선과일 및 축산물,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음식점 원산지 표시의무는 부과하고 있지 않음
- 일본 역시 식품표시법에 따라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 하고 있으나, 음식점 원산지 표시는 가이드라인을 통하여 원산지 표시에 대한 증빙을 보관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 EU는 ‘소비자에 대한 식품 관련 정보 제공에 관한 제1169/2011호 EU 규정(Regulation (EU) 1169/2011)’에서 원산지 표시 의무 및 대상품목을 특정하고 있으며, 음식점 원산지 표시 등 추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 회원국에서 별도로 시행 조치중인 것으로 나타남

표 4. 주요국의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 제도 및 증빙자료 보관 의무

구 분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 의무 대상	음식점 원산지 표시 및 증빙자료 보관 의무
미 국	• 대상품목: 신선과일과 채소, 쇠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수산물, 땅콩 등 (근거법: 2002 Farm bill)	• 없음
일 본	• 모든 신선, 가공식품 (근거법: 식품표시법)	• 가이드라인을 통하여 권고
E U	• 신선한 과일 및 야채, 수산제품, 꿀, 올리브유 및 계란, 쇠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염소고기 (근거법: Regulation (EU) 1169/2011)	• 회원국 개별 의무화 도입

자료: 각 국가 법령 참조

원산지 거래 증빙자료 비치·보관 의무 도입에 대한 인식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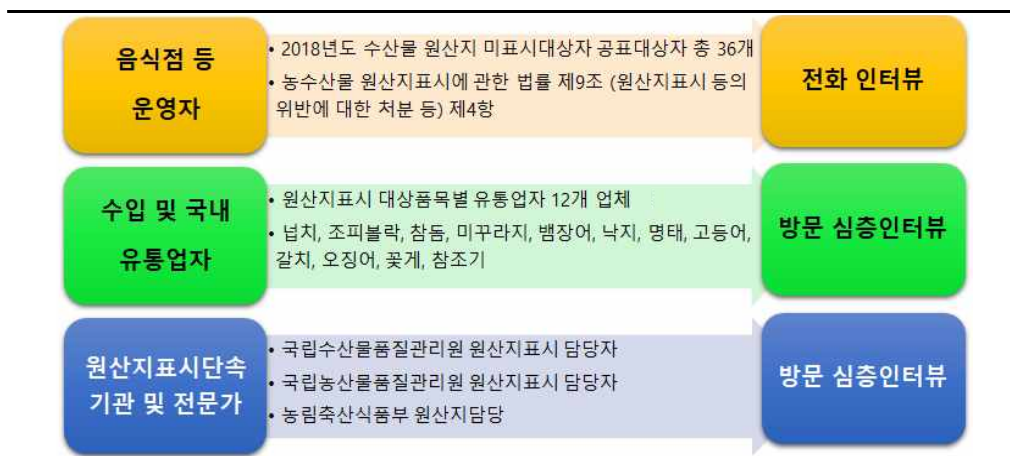
■ 효율적인 원산지 표시 단속을 위한 원산지 표시 거래 증빙자료의 발급·보관 의무 도입 필요성

- 농수축산물 중 축산물의 경우에만 「축산물 위생관리법」과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발급근거를 마련하고 있을 뿐, 수산물은 원산지 표시 거래 증빙자료를 발급·보관할 수 있도록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어 단속의 효율성이 저하됨
- 원산지 표시 단속기관은 정황상 원산지 표시가 의심스럽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이를 입증할 직접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원산지 거짓표시의 단속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수산물 거래시 원산지가 표시된 영수증 또는 거래 명세서의 발급 및 보관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도입하여 수산물원산지 표시 단속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향후 음식점 등의 원산지 표시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방안을 검토함

■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도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원산지 거래 증빙자료 발급 및 보관 의무화에 대하여 업계 종사자들의 인식조사를 수행

- 수산물 원산지 거래 증빙자료의 발급·보관 의무 도입은 관련 업계 당사자 및 정부에 큰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됨. 특히, 음식점 등 운영자의 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법령 개정에 앞서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인식조사가 필요함
- 법 개정에 따른 의무화가 현실적으로 적용에 무리가 없는지, 그리고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가능한 도입방안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인식조사를 수행함

그림 1.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도 관련업계 인식 조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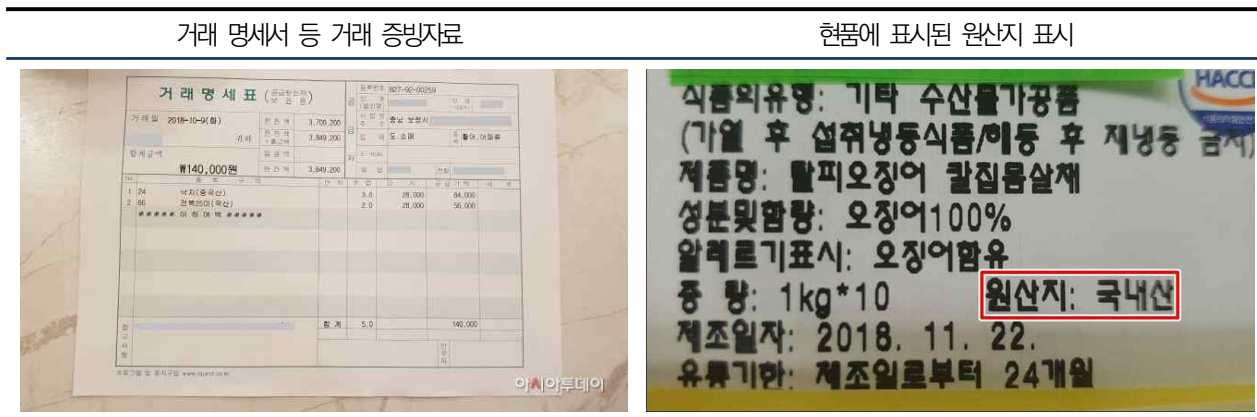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 (음식점 업계) 매입 영수증·거래 명세서의 보관 : 증빙서류의 보관 및 관리의 번거로울 수 있으나 보관 가능. 현실적으로 거래 명세서 대신 ‘장부거래’ 주로 이용

- 음식점 등 운영자는 거래 증빙자료 보관 의무 의무화를 추가적인 업무로 인식하며, 비용이 발생하는 등 원산지 정보를 표시하여 거래하는 행위 자체를 부담스러워 함
- 거래 증빙자료의 낮은 보관율은 음식점의 수산물 거래관행에서 기인한 것으로 예상됨
- 수산물을 취급하는 대부분의 음식점 등 운영자는 영수증 또는 거래 명세표 등에 표시된 원산지를 근거로 사용해야 하나(그림 2. 좌), 매입시 박스에 표시된 원산지 표시를 메뉴판 등의 원산지 표시에 대한 근거로 사용하고 있음(그림 2. 우)

그림 2. 수산물 원산지 표시 방법



자료: SBS 뉴스. 중국산 오징어 22t 국산 둔갑... 짬뽕 재료로 유통. 2018.12.04.

아시아투데이. 대전시 특별사법경찰, 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업소 6곳 적발. 2018.11.12.

- 박스 등 현품에 표시된 원산지 표시를 음식점 메뉴판 등의 원산지 표시에 대한 근거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박스에 표시된 원산지 표시 또는 박스 자체가 분실, 훼손될 우려가 높아 원산지 표시의 증빙으로 사용되기 어려운 점이 존재함
- 음식점은 영업장소가 협소한 경우가 많고 공간의 확보가 쉽지 않으며, 음식물을 가공하므로 습기가 많아 종이서류의 관리가 쉽지 않고 훼손될 우려가 많은 것이 현실임
- 또한 원산지가 표시된 박스는 잘 관리되는 경우도 있으나, 공간을 많이 차지하므로 내용물이 모두 소진되는 경우에는 더 이상 보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폐기 처분하는 경우가 다수임
- 이러한 이유로 음식점 운영자는 대부분 물품의 기재가 간편하고 공간의 효율성이 높은 장부거래를 이용하고 있음

■ (유통업계) 원산지 표시 거래 명세서의 발급 의무 : 수입업체, “소비자 신뢰도 향상시킬 것”, 영세업체, “실제 직거래·현금거래 대부분”, “재고관리비용의 상승으로 가격경쟁력 저하”

- 유통업자 중 일부는 최종적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도의 정착을 앞당기고 소비자 알 권리를 충족한다는 측면에서 제도 도입을 긍정적으로 인식함. 정확한 원산지 표시가 궁극적으로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수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원칙적인 부분에서는 동의함
- 찬성 의견을 표명한 업체들의 특징은 현재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수입 유통이력 제도’를 활용 중임
- 또 다른 특징은 ERP¹⁾와 같은 전산처리 시스템의 도입으로 원산지 관리를 위한 별도의 인적자원 투입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임
- 전산상 품명과 함께 원산지 정보를 기입하면 출고시 거래 명세서 등에 자동적으로 원산지 정보가 표시되므로 거래증명서 의무도입으로 인한 별도의 생산단가 인상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인식함

표 5. 유통업계의 거래 명세서 발급 의무에 대한 인식

	거래 명세서 발급 의무 긍정적	거래 명세서 발급 의무 부정적
인 식	• 수산물 원산지에 대한 소비자 알 권리 충족 • 투명한 수산물 유통체계 발전에 기여	• 영세업체들의 서류관리의무로 생산단가 증가할 것 • 수산업계의 가격경쟁력 저하의 원인이 될 것
특 징	• 수입유통이력제도 적극 활용중 • ERP 등 전산처리시스템 활용으로 추가비용 없음	• 대부분 직거래·현금거래 대부분으로 서류발급 곤란 • 전산처리시스템 없으며, 대부분 간이영수증 발급

자료: 저자 작성

- 반면, 원산지를 표시한 거래 증빙자료 의무 도입에 반대하는 업체들은 동 규제조치가 기업들의 재고 관리비용 증가를 유발시키고 생산단가 증가를 초래하여, 결국 업체들의 가격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인식함
- 영수증 및 거래 명세서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은 추가적인 인적자원의 투입이 요구되는 규제로서 원산지별로 구분 및 관리해야 하므로 그 만큼 재고번호의 개수가 증가할 것이며, 이를 관리하는 것은 결국 노동자(직원)이므로 1인당 해야 할 업무가 증가하는 것을 의미함
- 원산지 표시 단속 등으로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기간(현행 6개월) 동안은 해당 서류를 관리해야 하나, 영세한 규모의 수산물 유통업체가 다수인 현실을 고려하면, 전산시스템의 미비 및 협소한 사무공간 등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수입 유통 이력제도’를 활용하는 수입산에 비해 수산물 이력제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는 국내산의 경우 원산지 거래증빙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분석됨

1)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전사적 자원관리.

■ (정책당국) 보관 의무의 도입은 원산지 표시 단속의 효율성 증가와 적발율 증가로 이어질 것.
다만, 자율적인 발급·보관을 위한 대체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 거래 증빙자료 의무도입이 불필요하다고 보는 의견은 이러한 조치가 단속자 입장만을 고려한 규제조치이며, 다른 확인방법 등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일 수 있음을 지적함
- 현재 원산지 표시 제도에서 각 음식점 등에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는 조치를 고려할 때, 추가적으로 거래 증빙자료를 보관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중으로 의무를 부과하는 것임
- 거래 증빙자료의 보관이 아니더라도 원산지 표시의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는 대체 방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 수입 농수산물인 경우, 관세법에 따른 ‘수입 유통이력제’를 통하여 원산지정보 확인이 가능하며, 국내물품인 경우 ‘이력추적 관리제도’를 통하여 거짓원산지 표시인지 확인이 가능함
- 추가적으로 최근 개정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 시행규칙에서 음식점 등 운영자 스스로 거래 증빙자료를 보관할 유인이 있음을 강조하면서, 의무 도입이 규제적 성격이 존재함을 언급함

표 6.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개정사항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 시행규칙 (개정 전)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 시행규칙 (개정 후)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또는 제공할 목적으로 냉장고 등에 보관·진열하는 경우에는 제품 포장재에 표시하거나 냉장고 등 보관장소 또는 보관용기별 앞면에 일괄하여 표시한다.	----- 다만, 거래 명세서 등을 통해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산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자료: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일자 2019.9.10.)

- 그러나 원산지 표시 거래 증빙자료 보관 의무의 도입은 원산지 표시 단속의 효율성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됨. 원산지 표시를 입증하는 거래 증빙자료를 확인한다면, 원산지 거짓표시의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입증에 수반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고 강조함²⁾
- 원산지 표시 단속 수행자는 음식점 등 방문시 원산지 표시유무를 확인하고 있지만, 이러한 원산지 표
시의 진위를 확인하는 객관적인 증빙수단이 부재하여, 원산지 표시가 거짓표시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서는 포장지 검사, 주요 공급처 확인 등 간접적인 수단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 담당자에 따르면 원산지 거짓 표시가 의심스러워도 이를 실제 원산지 거짓 표시로 증명하기까지는
쉽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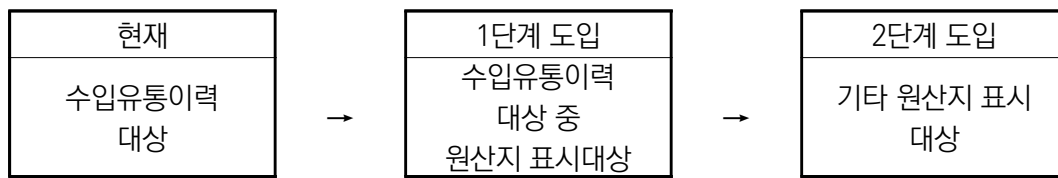
2) 해양수산부는 현재 1% 수준인 원산지 단속비율을 2021년에는 20%까지 늘리기 위해 원산지 단속인력 확충을 적극 추진할 계획(해양수산부, 수산물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단속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2019. 5.1)

수산물 원산지 증빙자료 보관 의무제 도입방향

■ 수산물 유통구조를 반영한 거래 증빙자료 보관 의무 도입

- 일방적인 의무의 부과만이 원산지 표시 단속 효율화 방안은 아니며, 가능한 한 비치·보관 의무의 부과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이 필요함
-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시행령에서 영업의 종류와 범위를 세부적으로 규정한 바와 같이, 현재 수산물 유통단계에 있는 영업자들의 영업의 범위와 종류 등을 명확히 하여 거래증빙자료의 발급 의무 대상자를 특정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거래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하는 수산물의 종류를 단계적으로 적용하여, 유통판매업자가 거래 명세서의 발급에 어려움이 없도록 법령을 개정,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함

그림 3. 거래 증빙자료 보관대상 수산물 단계적 적용 방안



자료: 저자작성

■ 수산물 이력제 등 원산지 표시 확인이 가능한 관련 법 규정 활성화

- 축산물 원산지 표시의 원활한 이행은 거래 증빙자료의 수취와 함께,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축산물 이력관리제’의 영향이 큰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음
- 현재 음식점 등에서 유통되는 대부분의 축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은 이력 관리대상과 상당부분 일치함

표 7. 축산물관련 법령상 관리 대상 품목

축산물 이력관리대상	축산물 원산지 표시대상
소, 돼지, 닭, 오리의 축산물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염소)고기 (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을 포함)

자료: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20.1.1.)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 이력 관리 번호에는 원산지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원산지 표시 거래 증빙서류를 확인하지 않고 이력 관리 번호가 부여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만으로 원산지 표시 증빙이 가능함
- 수산물의 경우에도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 이력 관리를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수산물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원산지 표시 제도에 활용이 가능할 것임

- 현재 굴비와 생굴에 한하여 수산물 이력제가 시범적으로 의무 시행되고 있어 동 사업의 경과에 따라 원산지 표시 제도 역시 활성화 될 수 있을지 주목됨
- 또한 수입수산물에 적용되는 수입이력관리제도는 현재 의무적으로 이행되고 있어, 원산지 표시 거래 증빙자료로 활용이 가능함
- 특히, 2020년부터 수산물 수입이력관리업무가 관세청에서 해양수산부로 이관될 예정으로 각 정부기관에서 관할하고 있는 두 개 법령의 효율적 집행이 예상됨

■ 거래 증빙자료 의무 도입의 효율적 이행을 위한 민관 지원체계 구축

- 원산지 표시 거래 증빙자료인 영수증, 거래 명세서가 종이서류인 경우, 우선 해당 서류가 적절한 장소에 비치·보관되는지 확인해야 하며, 특정 품목의 거래 사실 및 해당 서류의 진위여부를 확인해야 하나 이는 효율적인 시스템의 구축이 요구됨
- 업계 전문가들은 효율적인 단속 시스템을 위하여 최종적으로 거래 증빙자료가 전산화되어 위와 같은 문제점들이 해결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함
- 그러나, 전산 시스템의 구축은 일반적으로 높은 대가를 지불해야 구축할 수 있어, 자금이 부족한 소기업 또는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따라서, 정부는 원산지 표시 거래 증빙자료를 전산화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 특히, 원산지 표시 전산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자금이 부족한 영세기업 또는 재래시장 자영업자에게 전자저울을 활용한 자동 원산지 표시 발급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방안이 될 수 있음

그림. 4 전자저울



자료: 지마켓, <http://item.gmarket.co.kr/Item?goodscode=246127771>(검색일: 2019.11.1.)

- 또한 정부의 단속효율화 측면에서 거래증빙자료의 확인 등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업무량의 증가 및 원산지 표시 단속 비율 증가 예정에 따라 단속행정인력의 보강이 필요함

KMI 동향분석

구분	제목	발간일
제1호	한진해운사태로 부산항 환적물동량 연간 50만 TEU 이상 줄어듦	2016.11.02
제2호	지진예측을 위해 해저활성단층 조사가 시급하다	2016.11.09
제3호	미 대선 결과에 따른 해운·항만·수산 부문 영향과 대응	2016.11.16
제4호	우리나라 선박의 28%, 고효율·친환경 선박으로 교체가 시급하다	2016.11.23
제5호	해운업 구조조정 지원, 정책금융 왜 실효성 없었나?	2016.12.01
제6호	해운의 산업적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해운금융 시스템 구축해야	2016.12.08
제7호	수산업·수산물, 식량부문의 4차 산업혁명 예고	2016.12.15
제8호	해운 얼라이언스 재편으로 부산항 환적물동량 추가 감소 우려	2016.12.26
제9호	해양수산정책,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해양수산의 성과와 과제	2017.01.04
제10호	해양수산과 국민경제 -‘2017 KMI 해양수산 전망대회’지상 중계 -	2017.01.11
제11호	중·일 해양경비력 강화에 따른 전략적인 대응 필요	2017.01.19
제12호	2016 유엔총회 결의, 한국 KMI의 역할 높이 평가	2017.01.26
제13호	연근해어업 생산량 92만 톤으로 추락, 특단의 자원회복 대책 필요	2017.02.01
제14호	빅 데이터로 본 2016 해양수산	2017.02.08
제15호	對EU 수산물 수출, 환경인증제도 개발에 대비 필요	2017.02.15
제16호	남해 EEZ 모래채취 갈등을 수습할 공동연구와 대책이 시급	2017.02.22
제17호	아베 정권, 독도 침탈 노골화 - 초·중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에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 명기 -	2017.02.23
제18호	‘전국 해양수산 가치 공유로 지역 상생발전시대 막 열어’ 2017 전국 해양수산 대토론회 성황리에 개최	2017.03.02
제19호	동북아 허브경쟁력 강화 위해 부산항 LNG 벙커링 터미널 구축 서둘러야	2017.03.15
제20호	2017년 중국 ‘양회’, ‘해양강국’ 건설 천명	2017.03.24
제21호	3대 얼라이언스의 체제 변화로 부산항 운영 비효율성 개선 시급	2017.03.31
제22호	우리 해운산업도 민관 협력 산업정책(Smart 산업정책) 적용해야	2017.04.07
제23호	국민 78.7%, 해양수산에 ‘보통 이상의 관심’, 국민 인식과 정책 수립 함께 가야: KMI, ‘전국’ 규모의 ‘해양수산 국민인식조사’ 첫 실시	2017.04.14
제24호	러시아 명태 비즈니스 모델, 우리 수산업의 새로운 활력 기대	2017.04.19
제25호	어린 물고기를 살릴 지혜로운 소비로 국민이 수산자원관리를 주도해야	2017.04.21
제26호	블록체인 기술 적용으로 컨테이너 화주의 비용 20% 절감 가능	2017.04.28
제27호	국내 크루즈시장 체질개선 시급	2017.05.04
제28호	항만도시 미세먼지 대책 수립 시급	2017.05.18
제29호	中 일대일로, 글로벌 SCM 구축을 통한 중국식 세계화 전략 본격화	2017.05.25
제30호	새 정부의 해양수산 일자리 창출 방안	2017.06.01
제31호	4차산업혁명의 침범! ,로봇·스마트 항만이 현실로... - 한국, 완전무인자동화 항만 세계 흐름을 따라가야 -	2017.06.07
제32호	60돌 맞은 원양산업, 원양어업 재건을 위한 특단 대책 필요	2017.06.14
제33호	‘여객 안전’과 ‘일자리 창출’ 위해 연안여객 운송의 대중교통체계 편입 필요	2017.06.21
제34호	소매 수산시장 해수공급시설 교체시급, 국민들은 가격표시제 요구	2017.06.28

구분	제목	발간일
제35호	항만도시의 미세먼지 저감 위해 AMP 설치 서둘러야	2017.07.05
제36호	G20 해양쓰레기 실행계획 채택, 국내 관리 및 대응 강화 필요	2017.07.12
제37호	해운-조선, 상생(相生) 통해 불황극복과 재도약 모색해야	2017.07.19
제38호	국내 해수욕장 관리, 패러다임 변화 모색 필요	2017.07.26
제39호	최근 해양 국제기구의 거버넌스 변화와 우리나라의 역할 증대	2017.07.26
제40호	재조해양(再造海洋)으로 해양의 '판'을 키워야 : '2017 해양수산 국정과제 이행 전략 세미나' 지상중계	2017.08.02
제41호	신재생에너지, 해양에서 답을 찾자	2017.08.09
제42호	수산업에 대한 UN 대북제재 결의 2371호의 영향	2017.08.16
제43호	신정부, 선박교통관제(VTS) 관리체계 개선 필요	2017.08.23
제44호	바다의 불청객 갯벌이모자반, 다각적인 대응 방안 수립 시급	2017.08.31
제45호	한진해운 사태의 반성과 원양정기선 해운 재건 방안	2017.09.12
제46호	한·러 정상회담, 북방경제 협력 기회 - '9 브릿지'를 해양수산세부 전략으로 구체화할 필요 -	2017.09.13
제47호	갯벌복원 사업 확대에 대비한 원칙과 기준 마련 필요	2017.09.20
제48호	일본 항만 발견 붉은 불개미 확산 우려, 방역체계 마련 시급	2017.09.20
제49호	항만보안 강화를 위한 항만시설 보안료의 현실화 필요	2017.09.29
제50호	지역균형발전, 해양수산에서 답을 찾다: '해양수산 전국포럼 강원세미나' 지상중계	2017.09.29
제51호	'국민 횡감' 자리매김한 수입 연어, 안정적인 먹거리 차원 관리 필요	2017.10.12
제52호	부산항 터미널 생산성 향상대책 수립 필요	2017.10.23
제53호	대형 해양사고 예방대책이 우선되어야 - 물질, 인적, 제도적 측면에서의 과학적 사고 원인분석과 사전 투자 확대 필요 -	2017.10.27
제54호	미국의 수산물 수입 모니터링 프로그램 시행에 대한 국내 대책 필요	2017.10.27
제55호	국내 해양치유관광 육성 계기 마련	2017.11.01
제56호	지역균형발전, 해양수산에서 답을 찾다: '해양수산 전국포럼 충남 지역세미나' 지상중계	2017.11.10
제57호	수산업노동법 제도 개선 방향 - 마을공동기금 활성화 등으로 어업인 만족도 높이는 내실화 필요 -	2017.11.15
제58호	새 헌법에 해양수산의 가치 반영되어야	2017.11.22
제59호	1만 톤급 이상 대형 제2쇄빙연구선 건조 시급	2017.11.24
제60호	제19차 당 회의를 통해 본 시진핑 2기 중국 해양수산 정책 방향	2017.11.29
제61호	바다의 반도체 김, 수출 1조원 달성 전략	2017.12.06
제62호	지역균형발전, 해양수산에서 답을 찾다: '해양수산 전국포럼 전남 지역세미나' 지상중계	2017.12.13
제63호	골고루 잘사는 국가 실현, 지역 경제 활성화 위해 작은 SOC 사업을 강화해야	2017.12.20
제64호	부산항, 2,000만 TEU 달성 의미와 향후 과제	2017.12.27
제65호	'핵심 키워드'로 본 2017년 글로벌 해양수산	2018.01.03
제66호	빅데이터로 본 2017 해양수산	2018.01.10

구분	제목	발간일
제67호	해양수산물과 국민경제 - '2018 해양수산물 전망과 과제' 지상 중계 -	2018.01.17
제68호	'2017년 KMI 물류기술수요조사'를 바탕으로 물류 R&D 추진되어야 - 범부처 R&D 추진필요 -	2018.01.24
제69호	바다낚시 정책, 안전·환경·자원 관리 차원에서 접근해야	2018.01.31.
제70호	해상 안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안해상교통의 대중교통화 추진 필요	2018.02.07.
제71호	일본 '영토·주권전시관' 개관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 - 중요 사료의 영문화 작업을 통하여 세계 주요 전문가 대상 홍보 강화해야 -	2018.02.07.
제72호	자율운항선박, 침체된 해운산업 및 조선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	2018.02.14.
제73호	중국 '북극정책백서' 공식화로 북극 투자 증가할 듯	2018.02.21.
제74호	스마트항만(Smart Port), 전체 물류망을 고려한 로드맵 수립 필요	2018.02.28.
제75호	대형 재난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선박 및 항만시설 활용방안 강구 필요	2018.03.09.
제76호	연안지역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 방지를 위한 지역 중심 대응방안 마련 시급	2018.03.14.
제77호	바다이용의 대전환, 해양공간계획 추진을 위한 대책 마련 시급	2018.03.21.
제78호	전국 해양수산물 현안과 정책 공유로 지역혁신성장과 균형발전에 본격적 돌입	2018.03.30.
제79호	정부의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의 의의와 과제 - 해운 정책 지속적 추진 필요 -	2018.04.13.
제80호	국민 92.2%, 미래 국가발전에 해양이 중요하다고 인식: '2018 해양수산물 국민인식조사' 결과	2018.04.20.
제81호	2017년 우리나라 컨테이너 항만 선석생산성 크게 개선	2018.04.30.
제82호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이행을 위한 대응책 마련 절실... 2028년 종 료에 대비한 종합적인 대응전략 수립 시급	2018.05.10.
제83호	연안여객 안전 지원을 위해 해상여객안전공단(가칭) 설립 필요	2018.05.16.
제84호	전북 수요 증대를 위해 산지 온라인 직거래 활성화 등 대책 마련 필요 - 수익개선 위한 폐사율 저감 혁신 세워야	2018.05.24.
제85호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재활용 정책 확대해야	2018.05.31.
제86호	6.13 지방선거 이후, 지역 해양수산물 정책대응 필요	2018.06.11.
제87호	섬 정책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섬 전담 연구기관 설립 필요	2018.06.14.
제88호	수산양식, 국제양식규범에 맞게 생산체제 개선해야	2018.06.20.
제89호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에 정부 적극 나서야 : 동티모르 호주 조정 사건의 시사점	2018.06.27.
제90호	빅데이터 분석은 해운에서 어떻게 활용되는가	2018.07.04.
제91호	남북한 해양협력 증진을 위해 국제기구를 통한 남북협력 추진 필요	2018.07.11.
제92호	북한 경제 특구를 활용한 남북 해양수산물 협력 필요	2018.07.18.
제93호	해양벤처 육성을 위해서는 해양 분야 전용펀드 조성해야	2018.07.25.
제94호	김 재고 증가, 과잉생산 대책 마련 시급	2018.08.01.
제95호	해양바이오 기술사업화 정책지원 강화해야	2018.08.14.
제96호	근로시간 단축제도 안착을 위해 정부지원제도 강화해야	2018.08.29.
제97호	IMO 전략계획을 수용한 정책 수립과 이행성과지표를 구축해야	2018.09.05.
제98호	항만근로자 안전관리 거버넌스 재구축 필요	2018.09.21.
제99호	중국 진출 화주기업 물류애로 해소를 위한 물류기업 경쟁력 제고 및 정부 지원책 모색 필요	2018.10.02.
제100호	'스마트 어촌(Smart Fishing Community)' 도입으로 어촌 인구소멸에 대응해야	2018.10.17.
제101호	군 경계철책 철거 전 사전 대비 필요	2018.10.31.
제102호	우리나라 정기선 해운업계, 4차 산업혁명 흐름에 보다 적극 대비해야	2018.11.07.

구분	제목	발간일
제103호	해양강국 위해 한국해양법연구소 설립해야	2018.12.12.
제104호	우리나라 극지진출 40년, 미래 30년을 위한 극지 비전 수립 - '2018 북극협력주간' 성공적 개최와 세계최초 '2050년 극지비전' 선포	2018.12.19.
제105호	블록체인인의 확산과 해운물류분야의 대응	2019.01.02.
제106호	해양수산물과 국민경제 - '2019 해양수산물 전망과 과제' 지상 중계-	2019.01.18.
제107호	2020년 황산화물 규제 시행 대비 해운부문 체계적 대응 필요	2019.01.30.
제108호	"국민हित감 광어", 소비 다변화 등 생존전략 마련해야	2019.02.13.
제109호	한-일관계 개선 위해 일본의 자세 변화 필요	2019.03.08.
제110호	수산업관측사업 성과와 사회적 후생 증대 효과	2019.03.13.
제111호	특별법 이행을 위한 항만 대기오염물질 관리제도 정비 시급	2019.03.23.
제112호	2019년 중국 '양회', 해양수산물 관련 이슈 봇물, 항만비용 인하와 행정간소화 조치 에 주목 필요	2019.03.27.
제113호	'국민 80%, 해양이 국가발전에 기여' -KMI 2019 해양수산물 국민인식조사-	2019.04.17.
제114호	선박연료유 공급선박 벙커링 효율성 제고해야	2019.04.25.
제115호	4.27 판문점선언 1년, 해양수산물 남북협력 점검과 과제	2019.04.30.
제116호	주요국 해양정책 동향과 시사점 - 해양기반 성장전략 다시 만든다. -	2019.05.08.
제117호	김 종자 생산용 굴패각, 국산 대체로 생산어가 경영 안정에 기여할 듯	2019.05.09.
제118호	해양수산물 혁신사례 공유로 지역혁신성장 촉진	2019.05.15.
제119호	해양관련 국제기구, 글로벌 해양이슈 협력강화 논의 - 2019 글로벌 오션레짐 컨퍼런스 -	2019.05.24.
제120호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북극이사회와 우리나라 북극협력 방향	2019.05.29.
제121호	미-중 무역전쟁이 해운·항만에 미치는 영향	2019.06.13.
제122호	사평문화 정착을 통한 해양테저 활성화	2019.06.13.
제123호	어업작업 안전재해 감소 대책 시급 - 관련 제도 및 조직 정비 필요-	2019.06.18.
제124호	유조선 피격이 해운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향	2019.06.28.
제125호	친환경 선박법 이행을 위한 구체적 후속 조치 필요	2019.07.03.
제126호	북한 노동신문 키워드 분석으로 본 해양수산물 분야 시사점	2019.07.16.
제127호	대서양 연어 위해우려중 지정 유지에 따른 양식업계 대응 방향	2019.07.17.
제128호	섬 가치 제고, 접근성 개선과 고유자원 관리가 관건 - KMI 국민 섬 인식조사 결과 -	2019.07.17.
제129호	해양공간기본계획 7월 말 시행 - 지역사회 인식 증진과 역량 강화에 투자해야 -	2019.08.01.
제130호	항만도시 고용창출을 위한 항만배후지역 풀필먼트센터 구축 시급	2019.08.02.
제131호	현대상선의 얼라이언스 가입 의미와 향후과제	2019.08.02.
제132호	일본의 러시아 천연가스 공급망 구축 전략과 시사점	2019.08.05.
제133호	해양수산업 총산출액, 전 산업 9위 - 재도약을 위한 성장 전략 필요 -	2019.08.09.
제134호	한국 수산물 수출기업 성장 모멘텀 발굴 - 해외 글로벌 수산기업 사례로 본 -	2019.08.16.
제135호	한일 간 무역전쟁, 공급사슬 위험관리에 성패 달려 -해외 공급자 다변화 및 국내 대중소기업간 공급사슬 생태계 구축 등 대책 필요-	2019.08.19.
제136호	2018년 우리나라 컨테이너 항만 선석생산성 전년 대비 소폭 감소	2019.08.20.
제137호	국제해사기구(IMO), 2030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 新추진연료(화석 연료-OUT) 개발 및 사용을 의미	2019.08.22.
제138호	중국 항만시설사용료 추가 인하가 우리 항만에 미치는 영향 분석	2019.08.23.
제139호	2분기 해양수산물 업황 여전히 어려우나 3분기 점진적 개선 기대 - 해양수산업 경기실사지수(BSI) 발표 -	2019.08.28.
제140호	항만(부산항 등)-대륙철도 해륙복합운송으로 유라시아 지역 물동량 유치해야	2019.08.29.

구분	제목	발간일
제141호	일본의 수출규제가 해양수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 현재 11.9% 영향, 지속되면 23.0%로 증가 -	2019.08.29.
제142호	2019 제2차 한-베트남 공동 세미나 - '한-베트남 교류 협력 및 투자 활성화 방안' 지상 중계 -	2019.09.10.
제143호	K-IFRS 제1116호 '리스' 적용과 대응방향	2019.10.25.
제144호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 확대를 위한 추진 방향	2019.10.25.
제145호	해양포유류 자원 조사와 보호프로그램 마련 시급 - 2021년 미국의 관련 수산물 수입규제 유예기간 종료 -	2019.10.28.
제146호	미래 수산물 구매세대, 청소년의 수산물 소비행태 및 인식 조사결과	2019.10.28.
제147호	육상기인 해양 플라스틱 예방 정책을 강화해야	2019.10.30.
제148호	러시아 항만인프라 투자에 대한 실효성 제고 전략	2019.10.30.
제149호	Tax Benefit을 통한 민간부문의 선박금융 활성화 필요	2019.11.01.
제150호	2019년 미국의 국제 어업관리 개선 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2019.11.01.
제151호	'유엔 공해생물다양성협약' 제정(制定) 협상 대응전략 마련해야 - 내년 4월 협약초안 유엔 총회 제출 -	2019.11.04.
제152호	해운·항만 정책 의사결정 지원 빅데이터 플랫폼 개발 필요	2019.11.06.
제153호	컨테이너 선박다형화와 항만의 대응	2019.11.07.
제154호	해양에 설정된 보호지역, 지역주도형·협력적 접근방식으로 개편해야	2019.11.08.
제155호	해수욕장 이용행태 변화로 안전관리 개선방안 마련 필요	2019.11.12.
제156호	국제여객항 운영체계 개선과 여객 편의성 제고 필요	2019.11.13.
제157호	해양교육 문화 진흥법 만든다.	2019.11.14.
제158호	국내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의 글로벌 SCM 협력을 강화해야	2019.11.25.
제159호	디지털 연계 공동추진이 실효성 있는 스마트항만 구축의 첫걸음	2019.11.27.
제160호	수산물포장, 환경규제에 대응하고 기능 고도화를 추구해야	2019.11.27.
제161호	연관산업에서 수산업 미래 일자리와 부가가치 찾아야	2019.11.28.

URL: <https://www.kmi.re.kr/>